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의 표시

중간재무제표의 양식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하고 있음.

비교형식

- 재무상태표 –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
- 손익계산서 –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
-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

중간재무제표의 표시

비교표시 사례

- 2010년 6월 30일 종료하는 반기보고서의 경우 (분기별 보고 가정)

재무제표	당해 연도	비교 연도
재무상태표	2010.6.30	2009.12.31
손익계산서	2010.4.1 - 2010.6.30 2010.1.1 - 2010.6.30	2009.4.1 - 2009.6.30 2009.1.1 - 2009.6.30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2010.1.1 - 2010.6.30	2009.1.1 - 2009.6.30

중간재무제표의 표시

비교표시 여부 결정

- 전기 중간기간 재무제표의 작성여부에 따른 중간재무제표 비교 표시여부

전년 동일기간 재무제표 작성여부		비교 표시여부	
전년 1분기	전년 반기(누적)	2분기(중간기간)	반기(누적)
X	X	비교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O	비교표시	비교표시
X	O	비교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표시

인식과 측정

회계정책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 적용하여 작성 (독립적인 회계기간 관점)

측정기준

- 중간재무제표의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함.
-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함. (연간의 부분 회계기간 관점)
- 적시성 확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평가방법은 생략 가능함.
-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금액으로부터 역산하여 표시함.

수익과 비용의 인식

-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중간기간 중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 않는다.
-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지출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의 실무

계획된 대수선비

- 중간기간 이후 지출이 계획된 경우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기간 해당 부분을 인식
- 미래의 비용지출에 대한 단순한 의도나 필요성을 근거로 미리 비용 인식할 수 없으며 예산 등 미래 지출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지출이 확정된 중간기간에 전액 비용 인식

연말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이고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연말지급 이전의 중간기간에 해당금액을 인식

조건부 리스료

- 특정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중간기간에 계약조건의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면 그 중간기간에 추가리스료를 인식

인식과 측정의 실무

무형자산

-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원가 비용으로 계상
- 중간보고기간말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인식요건이 연내 혹은 이후 단기간 내에 충족될 것을 근거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자산손상차손

-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
- 연간과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손상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직전 회계연도 이후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 발생여부 개략적 검토

법인세

-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인식
- 동일 회계연도 내의 이후 중간기간 중에 연간 법인세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그 기간에 모두 반영

인식과 측정의 실무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상각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 중간기간 이후에 계획된 자산의 추가취득, 처분사항 등을 예상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표준원가의 차이

- 연내에 원가차이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근거로 원가차이를 이연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외화환산

- 당해 중간기간후의 환율변화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적용환율을 변경하거나 당해 중간기간에 인식할 손익을 이연하지 아니함.

가격할인

- 원재료 대량구매 등에 의한 가격할인이 확정적이면 그 효과를 미리 반영가능하지만, 계약 등으로 조건이 정해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성격의 가격할인은 자산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식하지 아니함.

중간기간의 회계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변경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었던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
- 이전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음.

회계정책의 변경과 재무제표의 재작성

-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
- 비교재무제표상 최초연도 누적중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재무제표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

주석사항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사항

- 중간재무제표 이용자는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재무제표 주석사항을 반복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유의적인 변동과 관련된 거래나 회계사건을 주로 기재한다.

중간재무제표 주석사항

-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 중간기간 사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
- 기타 중요한 사항 (문단 29.6)

최종 중간기간에 관한 공시

- 법령·계약 등으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주석공시사항
- 최종 중간기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와 최종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

K-IFRS 제1034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양식		
K-IFRS 1001호에 따른 완전한 재무제표 또는 1034호에 따른 요약 재무제표 선택 가능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계정과목의 요약, 일괄 표시 허용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최종중간기간에 대한 공시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내용과 금액을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	법령·계약 등으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종 중간기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와 최종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주석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회계변경 누적효과 반영방법		
누적효과를 실무상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장 빠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당기와 그 이후 기간에 반영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